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지정취소·사업정지 규정
및 교육총괄기관 지정 등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30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 연 회 의 원 대 표 발 의 (제 2207930 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지정취소·사업정지 규정 및 교육총괄기관 지정 등 (안 제31조, 제35조, 제44조)	3

I.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0793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연회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2. 6.

다. 회 부 일 : 2025. 2. 7.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관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 1)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
함
- 2)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교
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요구
한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 4)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4. 검토의견

가.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지정취소·사업정지 규정 및 교육총괄기관 지정 등(안 제31조, 제35조,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및 그 소속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u> <u>2.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안전교육등의 결과를 실제 안전교육등의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u> <u>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안전교육등을 하게 하지 아니할 것</u> <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전문교육기관 또는 그 소속 인력이</u>
<u><신설></u>	

현행	개정안
	<u>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u> 3. <u>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u> 4. <u>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u> 5. <u>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u> 6. <u>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u>
<u><신 설></u>	<u>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안전교육등 업무 총괄기관(이하 “교육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1. <u>제14조제7항에 따른 총괄기관</u> 2.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u>
<u><신 설></u>	<u>⑧ 교육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u>안전교육등 업무의 확인·점검</u> 2. <u>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u>

현행	개정안
<신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교육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육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⑪ 교육총괄기관은 안전교육등 업무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⑫ 제7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⑬ 그 밖에 교육총괄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 ----- -----

현행	개정안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제4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u>제20조의5 제3항</u>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전문교육기관</u> <u>8. 교육총괄기관</u>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u>제20조의5제3항</u>, 제31조제9항----- -----.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함)과 관련하여, 안전교육등을 위해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확인·점검하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1조¹⁾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등을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한국크레인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사)안전보건진흥원 등 9개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하고 있음.

1)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내용·방법·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 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 것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구 분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지정 요건	100	2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등 현황】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면허 취득자 215만명 중 실제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약 54만명

○**교육시간**: 3년 주기 1일 4시간 교육

○**교육내용**: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구조, 작업안전, 재해예방

○**교육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9개 민간 전문교육기관

-(사)한국크레인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사)안전보건진흥원,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²⁾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건설기계관리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과 유사하게 ‘교육·훈련 대행 기관’을 지정³⁾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정지·개선명령과 교육·훈련 대행 취소 후 일정 기간 대행 금지

2)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등4)의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고,

교육·훈련 대행 기관 외에 ‘교육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대행과 대행의 갱신 및 취소,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⁵⁾할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3(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교육·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20조의5(교육·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6(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3(교육·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교육·훈련 관련 규정 비교(요약)】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교육·훈련 의무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제31조제1항)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함.	건설기술인의 육성(제20조)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교육·훈련의 대행기관 지정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제31조제2항)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안전교육등 실시 가능	교육·훈련의 대행(제20조의2) -공공기관 또는 건설기술 관련 기관·단체를 통한 교육·훈련 대행 가능
	(개정안에서 신설)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안 제31조제4항) -안전교육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거짓으로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안전교육등의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안전교육등을 하게 하지 아니할 것	
	(개정안에서 신설)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사업정지(안 제31조제5항) -다음의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업정지(6개월 이내)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정지·개선명령(제20조의3) -다음의 경우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정지(1년 이내), 개선명령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기관이 된 경우 · 교육·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3.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전문교육기관 또는 그 소속 인력이 제 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따르지 않은 경우 ·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 그 밖에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에서 신설)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후 일정 기간 지정 금지 (안 제31조제6항) -지정 취소일부터 2년 동안 전문교육기관 지정 금지	교육·훈련 대행 취소 후 일정 기간 대행 금지 (제20조의3)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일부터 3년 동안 대행 신청 금지 ·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가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훈련의 총괄·관리 기관 지정 등	(개정안에서 신설) 교육총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안 제31조제7항 및 제10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등 업무 총괄기관(<u>교육총괄기관</u>)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총괄기관이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가능	교육·훈련의 관리(제20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업무 수행 가능 ·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제20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 가능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을 ‘<u>교육관리기관</u>’으로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서 신설) 교육총괄기관의 업무, 업무 결과 제출, 자료제출요구 등(안 제31조제8항) -교육총괄기관의 업무 · 안전교육등 업무의 확인·점검 ·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무 결과 제출 -교육총괄기관은 전문교육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서 관련 사항 규정]
	(개정안에서 신설) 교육총괄기관 지정 시 비용 지원 (안 제31조제1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교육관리기관에 위탁 시 비용지원 (제20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자료: 개정안 및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

「건설기술 진흥법」의 동 규정들은 2018~2020년에 도입된 사항들로,

개정 당시 종전의 법률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훈련기관이 부실 또는 부정하게 기관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⁶⁾하고,

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250호, 2018.7.6. 정부 제출) 의안원문 및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2018.11.) 참고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⁷⁾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임.

이에 비하여,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규정되기 전⁸⁾과 유사하게,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 이수 의무’와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위임 근거’만을 규정⁹⁾¹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건설기계관리법」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의 제도 개선 입법례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사업정지, 교육총괄기관 등을 도입함으로써,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983호, 2019.10.24. 이후삼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 및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2019.11.) 참고

8)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5719호, 2018.8.14. 일부개정, 2018.12.13. 시행)

(※교육·훈련 대행 기관의 대행 취소·정지·개선명령 등 규정 전의 법률)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⑤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는 2018년 9월에 신설되어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제 교육은 2020년부터 실시되었음.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내용·방법·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을 위해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부실 또는 부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역량 강화와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안전교육등의 품질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임.

한편,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¹¹⁾이 다수 있고, 현행법 제36조¹²⁾도 건설기계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본법」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3.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번호표 제작자나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교육총괄기관의 지정취소나 사업정지에 대해서도 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 삭제 <2017. 3. 21.>

국토교통부는 부정·부실 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전문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등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확인·점검하고 표준교재를 개발하는 등 안전교육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개정안이 교육총괄기관 지정 요건¹³⁾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중에서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유일한 상황으로 특정 기관이 교육총괄기관의 지위를 독점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교육총괄기관 지정 요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¹⁴⁾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개정안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안전교육등 업무 총괄기관(이하 “**교육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14조제7항에 따른 총괄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4)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 의 처
02)6788-5591